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 등 〉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1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	2
2. 환경영향평가서 재평가 요청 의무화 및 대상 추가 등	6
3. 환경전문기관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업무 위탁 등	10
4.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14
※ 참고자료	18
1.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시 절차	18
2. 최근 3년간 법 제17조제4항 및 제28조제4항 관련, 부실 작성을 이유로 보완요청 및 반려된 사례	19

I. 제안경위

2025년 5월 14일 서왕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생략)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u>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u> ⑤·⑥ (생략)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 <u>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u> ⑤·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현행	개정안
다. 1. (생략) 2. 환경영향평가서가 <u>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u> ⑤ ~ ⑦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u> ⑤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그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 하고¹⁾, 승인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면서²⁾,

1) < 참고자료1: 환경영향평가등의 추진절차 >

- 2)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 등을 검토하고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다만,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및 반려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해당 반려 제도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⁴⁾.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3)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국회토론회(녹색연합 주관) 자료집, 2024.11.26.

필요한 경우 두차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⁵⁾,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반려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⁷⁾.

5)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참고자료2. 최근 3년간 법 제17조제4항 및 제28조제4항과 관련하여 부실하게 작성되어 보완요청 및 반려된 사례>

7) 이외에 “국립생태원”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대한 과실’을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한국환경연구원”은 현행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8조제4항제1호의 규정과 중복되며, ‘중대한 과실’과 관련하여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에 대한 처벌은 엄격히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차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대상 판단 자격, 기준, 근거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환경영향평가서 재평가 요청 의무화 및 대상 추가 등

개정안은 ①환경영향평가서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를 재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②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평가 요청 의무를 부과하며, ③재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명령 요청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u>요청할 수 있다.</u>	제41조(재평가) ① ----- ----- ----- ----- ----- ----- <u>요청하여야 한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u>거짓으로 작성한 경우</u>	2. ----- ----- ----- <u>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③ ----- -----

현행	개정안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u>요청</u>할 수 있다. ④ (생략)	----- ----- ----- ----- -----<u>요청</u> <u>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제28조제4항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①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조치 명령 등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하거나 ②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재평가기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8)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법 제41조)]

- (재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만 해당⁹⁾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재평가 결정 주체)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

- (재평가 기관)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 (재평가 결과 조치, 비용부담) 조치명령, 사업자가 비용부담

※자료: 환경부

다만, 재평가 요청과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요청이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재평가 요청대상에서 제외되어 충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⁰⁾.

이에 개정안은 ①환경영향평가서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된

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법제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재평가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한정된다고 해석함(법제처 유권해석 안전번호 24-0292, 2024.6.11.)

10)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국회토론회(녹색연합 주관) 자료집, 2024.11.26.

경우를 재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②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평가 요청 의무를 부과하며, ③재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명령 요청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 제고와 충실한 평가 결과 도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④‘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는 주관적 해석 여지가 크고, ‘거짓 작성’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 부과는 법적 비례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②현행 제도 하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치명령 등과 같이 부실평가서에 대해 재조사, 환경보전방안 마련 등 보완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 있고¹¹⁾,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나 조치명령을 통한 환경보전방

11)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마련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③현행 제도가 환경부장관 등이 사안에 따라 조치명령 요청 필요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 조치명령 요청에 따른 행정효율 저해 및 행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¹²⁾.

3. 환경전문기관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등 업무 위탁 등

개정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의 경우 ①환경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②위탁한 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③위탁을 받은 환경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④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의 대행계약)

12) 이외에 “국립생태원”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대한 과실’을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환경연구원”은 평가서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평가의 기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재평가조항은 실시된 경우가 거의 없는 사문화된 상태의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현행	개정안
	위탁 등) ① <u>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탁한 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5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선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u> ④ <u>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u> ⑤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⑥ <u>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u>

현행	개정안
	대행자 선정 요청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¹³⁾을 하려는 자¹⁴⁾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업무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함¹⁵⁾.

다만, 이러한 평가대행 체제가 사업자 우위 구조로 운영됨으로 인하

13)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14)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1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여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이 저해되고 부실 작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¹⁶⁾.

이에 개정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의 경우 ①환경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며, ②위탁한 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③위탁을 받은 환경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④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통한 평가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환경부는 현행 평가제도에서 평가서 작성과 환경보전방안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 있음을 고려, 평가서등에 대한 책임 한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사전 예방하고 평가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정 대행비용 준수 및 평가업자 독립성 확보, 평가대행업체(1종·2종) 간 책임소재 명확화 등 개정안에서 도모하는 대행업체 계약체계 개선에 수반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논의 등을 통한 영향 분석, 제도설계(적용 대상사업 등) 등이 선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¹⁷⁾.

16)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국회토론회(녹색연합 주관) 자료집, 2024.11.26.

17) 이외에 “한국환경연구원”은 공탁제 도입은 평가 대행과정에서 독립성 강화하고,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공탁제

4.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76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과실로 부실하게</u>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신뢰성 축적할 수 있도록 점진적 이행 전략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음)

- ① 사업자 및 승인기관이 평가를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기반한 사회적 의사결정 절차가 아닌 행정허가 과정으로 인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한, 제도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 ② 공탁제 시행으로 사업자 책임이 위탁기관 및 대행업체로 전가될 우려, 실질적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향후 평가결과 논란 확대 우려되며,
- ③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 대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행계약 위탁 의무화는 법리 모순이고,
- ④ 사업자는 공탁제를 평가서 작성 과정의 문제나 주민 반대 등에 대한 책임 회피 사유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 ⑤ 검토기관으로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국립생태원등이 해당 환경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검토기관 지정과 충돌되고,
- ⑥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심층·신속평가, 약식평가 등 다양한 계층의 제도들이 혼재된 현행 구조하에서 위탁대행 사업 선정기준, 위탁범위 설정 등 법적 복잡성이 가중되고, 적용기준 명확성 확보 곤란하며,
- ⑦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 곤란, 대기환경·수환경·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단계에서 명확한 정량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정성적 기준을 대안으로 할 경우 객관성, 일관성 확보 어려움.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략)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5. (생략)	<u>작성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4.·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¹⁸⁾.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기초 자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

18)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는 자료를 과실로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예방 및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업자 및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수단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의 중대성, 제재의 비례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은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이 환경보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¹⁹⁾하여 조치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과실에 의한 부실 작성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유사입법례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²⁰⁾.

19) 협의내용 미이행,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 조치를 하는 경우 등(자료: 환경부)

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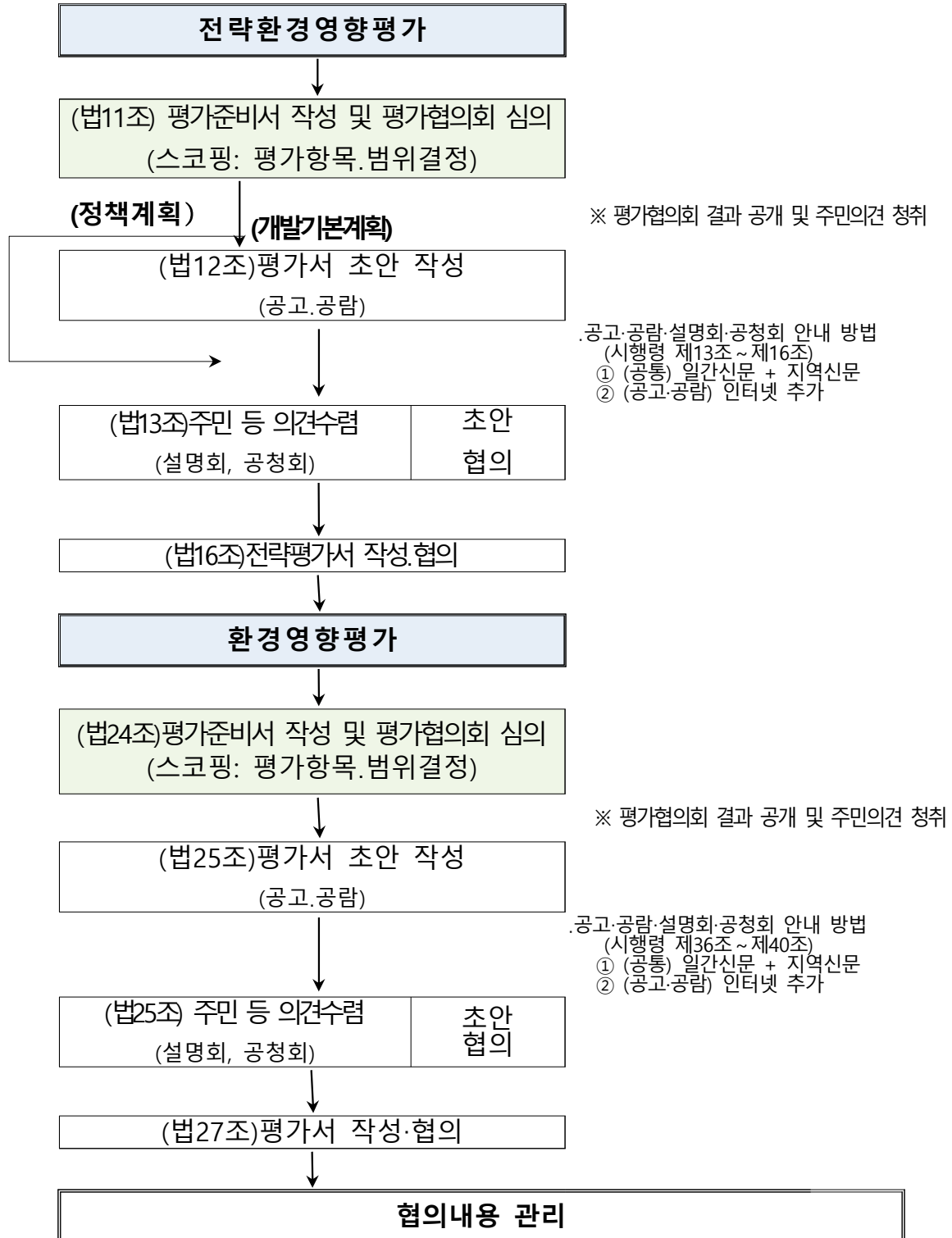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541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 참고자료

1.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시 절차



※출처 : 환경부

2. 최근 3년간 법 제17조제4항 및 제28조제4항 관련, 부실 작성을 이유로 보완요청 및 반려된 사례

반려일	사업명	평가 종류	반려 근거
'22.2.3	00종합물류단지조성사업	환평	제28조제4항제1호
'22.2.23	00도로건설공사(1단계)	환평	제28조제4항제1호
'22.8.4	00000시범단지조성을위한 00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전평	제17조제4항제1호
'22.9.8	0000000CC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대중골프장 9홀증설사업(2차)	환평(변경)	제28조제4항제1호
22.12.21	00근린공원(000조성사업)(1차)	환평(변경)	제28조제4항제1호
22.12.22	0000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전평	제17조제4항제1호
'23.2.2.	여촌정주어항(00항)개발사업	환평	제28조제4항제1호
'23.3.17.	00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평 소평	제17조제4항제1호
'23.6.29.	00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장사시설) 결정(변경)	전평	제28조제4항제1호
'23.12.5.	00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평	제17조제4항제1호
'24.1.9.	000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설치사업	환평	제28조제4항제1호
'24.7.4.	00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환평	제28조제4항제1호

※출처 : 환경부